

# 계약직운영내규

제정 2009.04.30    개정 2015.05.29  
개정 2010.10.20    개정 2015.07.01  
개정 2011.07.01    개정 2015.09.08  
개정 2012.05.11    개정 2018.11.21  
개정 2012.07.09    개정 2018.12.14  
개정 2013.10.24    개정 2019.03.28  
개정 2014.03.11    개정 2019.05.29  
                          개정 2019.12.05.  
                          개정 2020.04.0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직 채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계약직"이라 함은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7조 및 재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정원 외로 채용되는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2.05.11.>

**제3조(계약직의 정원)** 정원 외로 운영되는 계약직은 상근하는 계약직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으로 구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개정 2012.07.09>

**제4조(자격)** 계약직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채용절차 및 구비서류)** ①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아래 각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직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채용 의뢰하여야 한다.

1. 채용사유
2. 채용예정 직종 및 직급
3. 담당예정 직무 및 부서
4. 채용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계약직의 채용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필요시에 채용 계획 방침으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필기시험 면제 및 공고일을 10일로 단축하는 등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 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개정 2018.12.14.>

③ 계약직 채용시 지원자는 재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8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제7조(채용기간)** ①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업무내용,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단, 재단 부서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05.11.><개정 2015.07.01.><개정 2020.04.00.>

②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 및 능력, 태도를 평가하여 대표이사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05.29.><개정 2015.07.01.>

1. 인사규정 제12조 2항에 따라 채용한 경우
2. 법령상 의무·권장 사항 및 서울시 권장정책에 의해 채용된 경우
3. 대표이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계약직의 재계약 여부는 가능하면 계약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결정하여 별표2의 “근로계약종료 안내문”을 해당자에게 통지한다.

④ “고령자고용법 제2조 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최대 근로가능한 연령은 만70세로 하며 최대근로 가능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3.10.24.><개정 2018.11.21.>

**제8조(보직 및 겸직)** 계약직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초 보직 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시킬 수 있다.

**제9조(복무)** 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단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보수)** ① 보수는 연봉제에 따른 기본연봉 및 부가급여로 구분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한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②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재단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경비·미화의 경우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서울형 생활임금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5.29.>

**제11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계약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기간 중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적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의 종료,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3. 서울시 수탁사업의 종료,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형사입건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인사규정에 의거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기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② 계약직이 원에 의하여 중도사직(의원면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3개월 이상 근속한 계약직에 대해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30일전에 통지한다.

**제12조(수습기간)** 계약직 직원의 수습기간은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24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근무평정)**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재단 직원근무평정내규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05.29.>

**제14조(정규직채용 가점)**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계약직원의 경우, 정규직 고용형태 채용에 지원할 경우 채용과정에서의 우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비상용직 경력은 제외하며, 경력이 다수일 경우 가장 장기 경력만 인정하고 필기전형 시험성적이 매 과목 득점 40% 이상인 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한다.<개정 2012.05.11.><개정 2015.09.08.><개정 2019.05.29.><개정 2019.11.00.>

1. 계약직 근무경력 6개월 이상 1년 이하 : 필기전형시 만점의 5% 가점 <개정 2018.12.14.><개정 2019.11.00.>
2. 계약직 근무경력 1년 초과 2년 이하 : 필기전형시 만점의 10% 가점 <개정 2018.12.14.><개정 2019.11.00.>

**제15조(휴일 및 휴가)** 재단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각 호의 근로자들 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03.11.><개정 2019.05.29.>

①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16조(퇴직금)** 계약직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되, 근로기준법과 재단 퇴직금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을 적용하고, 시간제계약직에 대하여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등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채용된 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10.10.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기존 계약직관리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7.0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5.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7.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9.0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5.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12.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04.0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